

신용거래대주 위험고지문

※ 신용거래대주는 시장상승에 따라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대주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계약서류(신용거래약관, 거래설명서, 핵심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대주란

신용거래대주는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매도분에 대하여 해당주식을 대출받아 수도결제하는 신용거래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당사는 증권금융회사의 대여주식을 대출하는 유통대주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용 거래대주 조건

1) 대주가능 종목 : 유통금융 대주 대상종목 중 당사가 정하는 종목(매영업일, 장중 변경)

※가능 종목은 매일 변동 가능

2) 대주한도 : 일반투자자는 투자경험에 따른 한도제한

[일반투자자 한도]

■ 초기투자자 : 3천만원(사전교육 및 모의거래이수)

■ 경험투자자 : 7천만원(거래대주 횡수 5회 이상 and 누적 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 성숙투자자 : 10억(거래대주 횡수 5회 이상 and 최초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대주한도는 초기 - 경험 - 성숙 단계별로 적용됨

3) 대주만기 : 60일(연장불가)

4) 최소담보유지비율 : 170%(추가담보요구 및 담보부족으로 인한 임의상환은 신용융자와 동일)

5) 이자율 및 매각대금이용료율

■ 이자율 : 연 6%, 매월 첫 영업일과 상환시 징구

※ 당일 상환시에도 1일치 이자 징구

■ 매각대금이용료율 : 매월 첫 영업일과 상환시 지급(대주매각대금의 연 0.1%)

● 주가 상승에 따른 위험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대주의 NetPosition 관리

동일 종목의 상승포지션(보유)과 하락포지션(매도)의 동시 보유가 금지됩니다.(주민등록번호기준)

- 현물/신용잔고 보유시 동일종목 대주주문 불가(매수 미체결 잔고 포함)
- 대주 보유시 동일종목 현금매수/신용매수 불가(매도 미체결 잔고 포함)

4.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1) 공매도 포지션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주문으로 인해 신용거래대주 또는 차입매도 잔고가 거래 종목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0.01% 이상 이면서 평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주문으로 인해 신용거래대주 또는 차입매도 잔고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잔고 비율 무관)

2) 공매도 포지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주문으로 인해 신용거래대주 또는 차입매도 잔고가 거래 종목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0.5% 이상인 경우
- 공시내용: 투자자명(성명,주소,국적,생년월일), 종목명,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

3) 제출기한

- 보고 및 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장종료후 공시 예정)

4) 기타 유의사항

- 투자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의2 및 제39의4)
- 공매도 보고제도 관련 공식 매뉴얼은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자본시장보고 > 공매도포지션보고 > 이용안내

5. 권리관련 유의 사항

1) 권리대금 납부일에 계좌내 현금이 부족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며 해당 미수금에는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2) 유상/무상증자 시 권리대금(아래 산식)을 권리락일+2영업일에 자동징수 됩니다.

$[(\text{권리부최종매매일의구주식종가}) - (\text{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 \times \text{대주수량}$

3)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타감자, 피흡수합병 교환 이전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이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락일 전 영업일에 반대매수 처리 됩니다.

※ 그 외 권리사항발생시 권리락일 전영업일에 반대매수 처리 됩니다.

4) 유상증자 공시 익일부터 신주 발행가 확정을 위한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까지

대주 매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

본 위험고지문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험고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 신용거래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